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기통신법

주체100(2011)년 12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37호로 채택

주체111(2022)년 8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031호로 수정보충

제1장 전기통신법의 기본

제1조 (전기통신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기통신법은 전기통신시설의 건설 및 관리, 전기통신의 보장과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지휘통신과 인민경제의 생산지휘통신,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를 위한 통신을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전기통신이란 전기적수단에 의하여 본문, 음성, 화상 등 여러가지 자료를 송수신 및 전송하는것을 말한다.
- 전기통신망이란 정보를 받아들이고 전송하기 위한 전기통신수단과 체계로 이루어진 망을 말한다.
- 전기통신시설이란 전기통신보장에 리용되는 장치나 선로 같은것을 말한다.
- 전기통신가입자란 전기통신망을 리용하여 전기통신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을 말한다.

제3조 (전기통신발전원칙)

전기통신을 끊임 없이 발전시 키는것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전기통신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여 전기통신시설을 현대화하고 전기통신 능력을 부단히 높이며 그 운영을 정상화, 과학화하도록 한다.

제4조 (전기통신시설의 건설 및 관리원칙)

국가는 전기통신시설을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건설하고 그 관리를 과학적으로 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전기통신시설보호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한다.

제5조 (전기통신의 보장과 리용원칙)

국가는 전기통신의 보장과 리용에서 신속성, 정확성, 안전성, 봉사성, 문화성, 비밀 보장 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6조 (전기통신분야의 과학연구와 기술인재양성원칙)

국가는 전기통신을 현대화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현대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이며 전기통신부문에 필요한 기술인재를 더 많이 키워내도록 한다.

제7조 (전기통신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전기통신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8조 (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전기통신시설을 건설 및 관리하거나 전기통신을 보장,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적용한다.

제2장 전기통신시설의 건설 및 관리

제9조 (전기통신시설건설계획의 작성)

전기통신시설건설 계획은 국가계획 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전기통신에 대한 전망적인 수요를 타산하여 전기통신시설건설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제때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10조 (전기통신시설건설의 설계작성)

전기통신시설건설설계는 체신설계 기관이 한다.

체신설계기관은 건설대상과 규모 같은것을 정확히 타산하여 전기통신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제11조 (전기통신시설건설의 담당자)

전기통신시설건설은 체신기관, 기업소가 한다.

구내전기통신시설을 따로 설치하려 할 경우에는 체신기관의 합의를 받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건설한다.

제12조 (설계에 기초한 전기통신시설건설)

전기통신시설을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계와 기술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승인받지 않은 설계로는 전기통신시설건설을 할수 없다.

제 13 조 (전기 통신하부구조건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로, 공공건물, 살림집 같은것을 건설하는 경우 체신 기관과 합의하여 전기통신하부구조를 설계에 반영하고 질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제 14조 (기술검사)

전기통신시설건설이 끝나면 기술검사를 한다.

기술검사는 체 신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기술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전기통신시설은 리용할수 없다.

제15조 (전기통신시설관리의 담당자)

전기통신시설의 관리는 체신기관, 기업소가 한다. 그러나 따로 설치한 구내전기통신 시설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관리한다.

제16조 (전기통신시설의 점검)

체신기관, 기업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기통신시설을 정상적으로 점검하고 불비한 요소들을 제때에 퇴치하여야 한다.

제17조 (전기통신시설의 보수)

체신기관, 기업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기통신시설보수계획을 세우고 주기적으로 보수, 정비하여야 한다.

자연재해 나 그밖의 사정으로 전기통신시설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제때에 복구하여야 한다.

제 18조 (전기 통신시설보호구역)

전기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을 정한다.

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19조 (전기통신시설보호구역안의 질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기통신시설보호구역안에서 정해진 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전기통신시 설보호구역 안의 질서를 정 하는 사업은 중앙체 신지도기 관이 한다.

제20조 (전기통신기 계 실출입금지)

전기통신기계실에는 성원외 다른 인원이 들어갈수 없다.

필요에 따라 성원외 다른 인원을 들여보내려 할 경우에는 기관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제21조 (전기통신시설관리조건의 보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기통신시설의 관리를 위한 체신기관, 기업소의 사업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 3장 전기통신의 보장과 리용

제22조 (전기통신의 신속정확하고 안전한 보장)

전기통신의 신속성, 정확성, 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하는것은 체신기관, 기업소의 기본임무 이다.

체 신기관, 기업소는 산불피해, 큰물피해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통신이 두절 됨이 없이 원만히 보장될수 있도록 사전에 안전대책을 빈틈없이 세워야 한다.

제23조 (전기통신계획의 작성)

중앙체 신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늘어나는 전기통신의 수요에 맞게 전기통신능력을 높이 기 위한 현행계획과 전망계획을 세우고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제24조 (전기통신의 수요와 질보장)

체 신기관, 기 업소는 전기통신시설을 현대화하고 선진적 인 통신방식과 다양한 정보봉사들을 적극 받아들여 전기통신의 수요와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5조 (전기통신망을 통한 여러가지 봉사)

체 신기 관, 기 업 소는 전기 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우편봉사, 망령역 이 름봉사, 과학기 술 보급, 원격교육, 원격의료봉사, 화상회의, 전화회의 같은 여러가지 정보봉사를 할수 있다.

전자우편봉사, 망령역 이름봉사와 같은 중요정보봉사는 중앙체신지도기관이 정 한데 따른다.

제 26조 (전기 통신리 용신청)

전기통신을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통신종류에 따르는 리용신청서를 만 들어 체신기관에 내야 한다.

전기통신리용신청과 관련한 절차는 중앙체신지도기관이 정한데 따른다.

제27조 (전기통신리용신청에 대한 심의)

전기통신리용신청을 받은 체신기관은 그것을 정확히 심의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심의결과는 제때에 신청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28조 (명의 변경)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전기통신가입자의 이름, 직장직위를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명의변경신청서를, 주소가 달라진 경우에는 주소변경신청서를 체신기관에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9조 (전기 통신리 용조건보장)

체신기관은 전기통신리용이 승인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1개월안으로 통신을 리 용할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0조 (전기통신가입자자료의 관리)

체신기 관, 기업소는 전기 통신가입자자료를 정확히 등록하고 규정대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등록된 전기통신가입자자료는 승인없이 열람할수 없다.

제 31조 (전기 통신리 용질서 준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정해진 전기통신리용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전기통신을 리용하는 과정에 비밀을 루설하거나 전기통신수단에 불건전한 자료를 입력하거나 사용할수 없게 된 전기통신수단을 리용하는것 같은 행위를 할수 없다.

제32조 (전기통신시설, 수단의 비법적인 반입, 매매금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승인없이 전기통신시설 또는 수단을 다른 나라에서 들 여오거나 팔고사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3조 (전기통신수단의 등록)

기관, 기 업소, 단체와 국민은 전기통신수단을 정해 진데 따라 등록하고 리용하여야 한다.

체신기관, 기업소와 해당 기관은 비법적으로 전기통신수단을 등록해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34조 (전기통신료금)

전기통신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한 요금을 물어야 한다. 전기통신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제4장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5조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지도)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지도는 중앙체신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체신지도기관은 전기통신부문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36조 (전기통신부문의 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기통신부문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 같은 것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37조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체신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체신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가의 전기통신정책집행령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38조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 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전기통신시설건설질서를 어겨 전기통신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도로, 공공건물, 살림집 같은것을 건설하면서 전기통신하부구조를 건설하지 않았거나 망탕 하였을 경우
3. 전기통신시설에 대한 보수,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전기통신보장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4. 전기통신리용질서를 어겨 전기통신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전기통신리용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지 않았을 경우
6. 전기통신시설 또는 수단을 파손시켰을 경우
7. 전기통신수단을 비법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들여왔거나 매매하였을 경우

8. 전기통신수단을 비법적으로 등록해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2만원분정도이상의 재산적손실을 가져오게 한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 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39조 (형사적 책임)

우

4. 전기통신리용질서를 어겨 전기통신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전기통신리용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지 않았을 경우
6. 전기통신시설 또는 수단을 파손시켰을 경우
7. 전기통신수단을 비법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들여왔거나 매매하였을 경우
8. 전기통신수단을 비법적으로 등록해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2만원분정도이상의 재산적손실을 가져오게 한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 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39조 (형사적 책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운 다.